

충청북도 자율방법연합회 지원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손윤목

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6년 4월 18일 연철흠 의원 등 7명이 발의하여 2016년 4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정이유

-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도내 자율방범대에 안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, 교육훈련을 통해 방범활동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(안 제3조~제4조)
- 충청북도의 지도·감독 (안 제5조)
- 모범자율방범대원 표창 등 (안 제7조)

4. 검토의견

- 금번 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에게 안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활발한 범죄예방 활동과 교육훈련을 통한 방범활동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임.
- 먼저 자율방범대의 정의를 살펴보면,

- 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마을단위로 조직하여 관할 파출소와 상호협력관계를 갖고 방법활동을 하는 자율봉사조직으로,
 - 한국의 자율방범활동은 1963년 경 지역주민들이 부족한 경찰력의 공백을 메우고 범죄피해를 스스로 막아보겠다는 의지로 주민야경제에서 출발하였으며, 1996년 8월 16일 자율방범대관리지침이 마련되면서 조직명칭을 “파출소자율방범대”로 통일하면서 조직을 재정비하였음.
- 자율방범대에 대한 활동 및 지원근거는 법률로 제정되어 있지 않고, 지방경찰청별로 ‘자율방범대 관리규칙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방범대 관련 조례제정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실정임.
-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해 보면,
- 안 제3조 지원대상에 방법대의 지역 간 방법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, 범죄예방 캠페인 등 공익사업, 자율방범대원 교육사업으로 하였으며
 - 안 제4조에서는 자율방범연합회가 활동이 부진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하여 지원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적절하다고 사료됨
- 자율방범대는 현행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에 따라 포상, 보험가입 지원, 행정·예산지원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자율방범에 관한 조례제정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으나,

- 법령 규율 및 자치경찰제와는 별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은 지방자치 고유의 업무라고 할 것이며,
 - 치안업무 성격상 경찰의 직무를 보조하는 자율방범대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여타의 다른 자원봉사단체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할 수 있음. 법적 규율이 없이 임의 단체로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음
- 정부 차원에서 경찰법에 자율방범대를 규정하도록 개정하거나 자율방범대 관련법을 제정하기 전이라도 충청북도는 자율방범연합회에 관하여 지원 조례를 마련하여 도내에서 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과 이들에게 인권교육, 성교육 등을 통해 도민에게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: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1부. 끝.

참고자료

전국 광역시도 자율방범연합회 관련 지원조례 현황
(16. 4.19일 기준)

번호	지자체명	조례명	공포일자
1	인천광역시	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	15. 4. 13
2	광주광역시	자율방범대 지원 조례	15. 4. 1
3	대전광역시	자율방범대 지원조례	15. 10. 8
4	세종시	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	14. 12. 22
5	강원도	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	16. 2. 26
6	충청남도	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	15. 10. 30
7	전라북도	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	15. 10. 12
8	경상북도	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	15. 9. 24
9	제주도	자율방범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	15. 10. 6